KOSHA GUIDE

E - 114 - 2011

전기작업시의 작업공간 확보에 관한 기술지침

201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용진

ㅇ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시스템연구실

ㅇ 제정경과

- 2007년 6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07년 8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11년 12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ㅇ 관련규격

- KOSHA GUIDE E-85-2011 (전기설비 설치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)
- 미국전기기준 (NEC: National electrical code) Article 110 (Requirement for electrical installations)
- 국제전기기술위원회(IEC: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) 60364 Part 7-729(Requirements for special installations or locations - Operating or maintenance gangways)
- o 관련법령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(전기기계·기구 등의 충전부방호) 및 제 310조(전기기계·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1년 12월 29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전기작업시의 작업공간 확보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301조(전기기계·기구 등의 충전부방호) 및 제310조(전기기계·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)의 규정에 따라, 전기작업 시의 작업공간 확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600 V 이하의 저압과 600 V를 초과하는 고압으로 구분하여 전기기계·기구 등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 및 보수 시 필요한 작업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전기기계·기구(이하 "전기기기"라 한다)"라 함은 전동기·변압기·접속기·개 폐기·분전반·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·기구, 기타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.
 - (나) "노출"이라 함은 안전거리 이내로 가깝게 접근하거나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, 충전부분에 절연, 방호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.
 - (다) "방호"라 함은 작업자 또는 물체가 충전부분에 접촉되지 않도록 덮개·차폐· 장벽·매트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것을 말한다.
 - (라) "격리"라 함은 특별한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.

- (마) "분전반"이라 함은 캐비닛이나 컷-아웃 박스 내에 모선(Bus-bar), 과전류 차단장치, 스위치 등이 단일 판넬 형태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.
- (바) "배전반"이라 함은 대형 판넬 또는 프레임의 앞면이나 뒷면, 또는 양면 모두 에 모선, 과전류 차단장치, 스위치, 계측기 등이 부착된 것을 말한다.
- (사) "유자격자"라 함은 전기기기의 시공·운전 및 기타 작업에 관련된 기술자격을 보유하거나 교육을 받은 자로서 동일 분야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사용전압에 따른 작업공간의 구분

4.1 600 V 이하인 저압의 경우

4.1.1 전기기기 주위의 작업공간

- (1) 모든 전기기기 주위는 해당기기의 안전운전과 보수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. 자물쇠와 열쇠로 관리되고, 폐쇄된 장소에 설치된 전기기기의 작업공간에는 유자격자만 출입하도록 한다.
- (2) 600 V 이하인 충전부의 점검·조정·수리 등 활선상태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, 접근 방향에서 작업공간의 크기는 <표 1>의 최소이격거리 이상을 확보한다. <그림 1>과 같이 충전부분이 노출되어 있으면 그 부분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고, 밀폐되어 있으면 외함 전면이나 외함 개구부로부터 측정한다.

<표 1> 저압에서의 최소 작업공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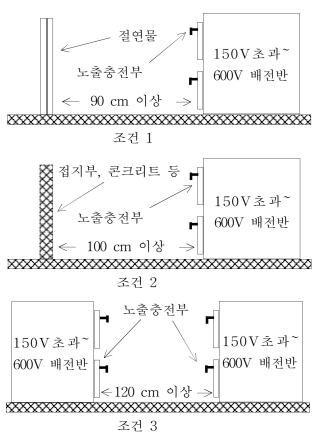
대지전압 (V)	최 소 이 격 거 리 (cm)		
네시신됩 (V)	조건 1	조건 2	조건 3
150 이하	90	90	90
150 초과 ~ 600 이하	90	100	120

(주)조건 1 : 작업공간의 한쪽 면에 노출된 충전부가 있고 다른 면에는 노출된 충전부나 접지된 부위가 없을 경우 또는 양쪽에 노출된 충전부가 있더라도 나무 또는 절연물로 방호 되어 있을 경우

(단, 300 V 이하에서의 절연전선, 절연된 모선은 충전부로 간주되지 않음)

조건 2 : 작업공간의 한쪽에 노출된 충전부가 있고 다른 쪽에 접지된 부분이 있는 경우. 콘크리트, 벽돌, 타일, 벽 등은 접지된 것으로 간주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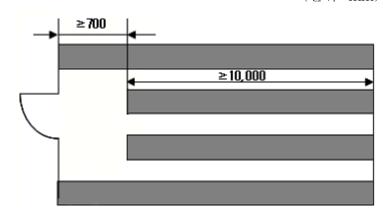
조건 3 : 방호되지 않은 노출충전부가 양쪽에 있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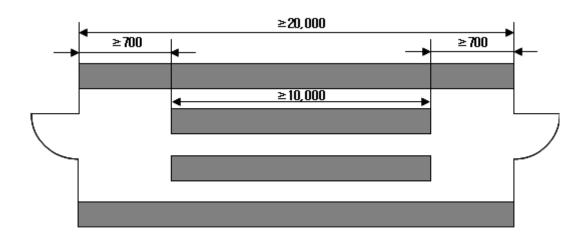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1> 각 조건에서 작업공간 예시

- (3) <표 1>의 최소 작업공간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충전부가 없고, 뒷면에서의 전기 작업도 필요 없을 경우에는 뒷면에 작업공간이 없어도 된다. 다만, 통전되지 않 은 전기부품을 작업하기 위해 뒷면 접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수평 70 cm 이상의 작업공간이 필요하다.
- (4) 작업공간의 폭은 배전반 등의 문을 90° 이상 열 수 있도록 하고, 최소한 전기장 치의 전면에서 70 cm 이상을 확보한다.
- (5) 이 지침에 의거 확보된 작업공간은 물품 저장소 등 타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.
- (6) 평상시에는 외함으로 격리되어 있으나 점검 또는 보수 시에 충전부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, 작업공간이 통로로 사용되거나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곳이면 덮 개·차폐·매트 등에 의한 방호조치를 한다.
- (7) 전기기기가 있는 작업공간에는 충분한 크기의 출입구를 1개 이상 확보한다.
 - (가) 통로의 길이가 10 m 이상인 장소에서 <그림 2>처럼 전기기기로 인해 한쪽 면의 통로가 막힌 경우에는, 출입문을 설치하고 벽면으로부터 최소 70 cm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한다.
 - (나) 통로의 길이가 20 m 이상인 장소에서는 <그림 2>처럼 양쪽 출입문에 의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.
- (8) 전기기기가 설치된 옥내 작업공간에는 전기기기의 조작부분이 150럭스 이상이 되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고, 전기기기실 내에서의 조명은 자동으로 제어되지 않도록 한다.
- (9) 배전반, 분전반, 전동기 제어반 등의 작업공간 상부는 바닥으로부터 최소 2 m 이 상을 확보한다. 전기기기의 높이가 2 m를 초과하는 경우 상부공간의 최소 높이는 기기 높이 이상을 확보한다.

(단위: mm)





<그림 2> 구획된 장소에서의 출입문 예시

4.1.2 충전부 방호

- (1)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인체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캐비닛 또는 절연된 외함 내에 설치하거나, 노출된 충전부를 다음의 방법에 의해 방호조치를 한다.
 - (가)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여 유자격자만이 출입하도록 한다.
 - (나) 유자격자만이 충전부에 접근하도록 칸막이 또는 망으로 방호된 곳에 설치한다. 칸막이나 망은 일반작업자가 직접 또는 도전성 물체를 통해 충전부에 접촉되 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.
 - (다)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전주 위 또는 적절한 높이의 플랫폼(Platform) 위

에 전기기기를 설치한다.

- (라) 바닥이나 기타 작업표면으로부터 상부 2.5 m 이상의 높이에 전기기기를 설치하다.
- (2) 외부의 기계적 충격에 의해 손상이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된 전기기기의 외함이나 방호장치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게 한다.
- (3)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실내 또는 기타 방호되어 있는 장소에는 유자격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표지를 부착한다.

4.2 600 V를 초과하는 고압의 경우

4.2.1 일반사항

공칭전압이 600 V를 초과하는 고압의 경우 4.1 및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.

4.2.2 설치장소의 구획

(1) 전기기기는 자물쇠 등 기타 승인된 방법에 의해 통제되는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고, 유자격자만이 출입하도록 한다. 구획된 장소의 울타리 높이는 2.1 m 이상 또는 1.8 m의 울타리 위에 3단 이상의 철조망을 30 cm 이상의 높이로 얹는다. 충전부에서 울타리까지의 거리는 <표 2>의 최소이격거리 값 보다 크게 한다.

<표 2> 충전부에서 울타리까지 최소거리

전 압 (V)	최소이격거리 (m)	
600 초과 ~ 13,800 이하	3.0	
13,800 초과 ~ 230,000 이하	4.6	
230,000 초과	5.5	

(2) 600 V를 초과하는 고압의 전기기기가 설치된 변전실의 벽, 천장, 바닥, 출입문은

KOSHA GUIDE

E - 114 - 2011

3시간의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건축구조로 한다.

- (3) 일반작업자의 접근이 허용되는 밀폐함에 수납된 전기기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.
 - (가) 노출된 너트나 볼트가 쉽게 제거되지 않고, 충전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제작한다.
 - (나)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밀폐함의 바닥이 지표면에서 2.5 m 이하에 설치될 경우 밀폐함은 잠금 상태를 유지한다.
 - (다) 밀폐함의 환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개구부는 이를 통해 들어간 이물질이 충전 부분으로 향하지 않도록 제작한다. 차량으로 물리적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를 한다.

4.2.3 전기기기 주위의 작업공간

- (1) 전기기기 주위는 운전 및 유지보수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한다.
- (2)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는 설비의 최소 작업공간은 높이 2.0 m (바닥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값), 폭 0.9 m (설비에서 수평으로 측정한 값) 이상이어야 하고, <표 3>에 의한 최소이격거리 이상의 깊이를 확보한다.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문은 90° 이상 열릴 수 있도록 한다.
- (3) 전기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작업공간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출입구를 확보하고, 그 크기는 폭 0.6 m, 높이 2 m 이상이어야 한다. 폭이 1.8 m 이상의 배전반 또는 제어반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면 작업공간 양쪽에 출입구를 확보한다.
- (4) 충전부분이 노출되어 있거나 대지전압이 600 V를 초과하는 절연체가 입구 가까이에 있으면 절연전선 및 절연 캡을 사용하여 보강하거나 충전부 주위에 투명프라스틱, 구획로프, 보호망 등 국부적인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방호조치를 한다.
- (5) 전기기기가 플랫폼, 다락 등과 같이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기기기

주변의 작업공간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고정 사다리나 계단을 설치한다.

4.2.4 작업공간에 대한 세부사항

- (1) 배전반, 차단기, 계전기, 전동기 제어반 등과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전면에서의 작업공간은 <표 3>의 최소이격거리를 확보한다. 여기에서의 이격거리는 노출된 경우 그 충전부, 밀폐된 경우에는 외함이나 개구부로부터 측정한 값이다.
- (2) <표 3>의 최소 작업공간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충전부가 없고, 뒷면에서의 전기 작업도 필요 없을 경우에는 뒷면에 작업공간이 없어도 된다. 다만, 통전되지 않 은 전기부품을 작업하기 위해 뒷면 접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수평 75 cm 이상의 작업공간이 필요하다.

<표 3> 600 V를 초과하는 전기설비 전면의 최소 작업공간

대지전압 (V)	최 소 이 격 거 리 (cm)		
	조건 1	조건 2	조건 3
600 초과 ~ 2,500 이하	90	120	150
2,500 초과 ~ 9,000 이하	120	150	180
9,000 초과 ~ 25,000 이하	150	180	280
25,000 초과 ~ 75,000 이하	180	250	300
75,000 초과	250	300	370

- (주) 조건 1, 조건 2, 조건 3은 <표 1>의 조건과 동일
- (3) 구획된 장소에 600 V 이하의 전기기기와 600 V를 초과하는 노출전선 또는 충전 부분이 있는 전기기기를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칸막이나 울, 격리판 등을 사용하여 방호하고, 고압기기와 저압기기의 설치장소를 격리시킨다.
- (4) 600 V를 초과하는 충전부분 또는 노출전선이 있는 건물, 방, 밀폐구역 등의 입구 는 잠금 상태를 유지한다. 다만, 유자격자가 출입구에 상주하는 장소는 예외로

한다.

- (5) 600 V를 초과하는 전기기기를 설치한 장소에는 "위험-고전압-출입금지"라고 쓴 표지판을 눈에 띄는 곳에 영구적으로 부착한다.
- (6) 전기기기 주위의 작업공간에는 전기기기의 조작부분이 150럭스 이상이 되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고, 전구의 교체 또는 수리작업 시에 작업자가 노출충전부나 타 설비의 작동부위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.
- (7) 작업공간 상부에 위치한 노출 충전부분은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 장 바닥으로부터 <표 4>의 최소높이 값 이상을 확보한다.
- (8) 전기기기의 설치, 유지보수 등과 관계없는 배관과 닥트는 금속제 배전반, 제어반의 주변에 설치하지 않는다. 다만 전기설비 보호를 위한 방재설비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표 4> 작업공간 상부에 위치한 방호되지 않은 충전부의 높이

전압 (V)	최소 높이 (m)		
600 초과 ~ 7,500 이하	2.5		
7,500 초과 ~ 35,000 이하	2.9		
35,000 초과	2.9 + 0.095 × (공칭전압 kV-35)		